

학습자료[산업안전보건교육(근로자정기)3]

▣ 1차시 계절별 건강관리_가을

*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법

- 야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긴팔, 긴바지, 모자 등을 착용하고 소매는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속으로 넣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한다.
- 풀밭에서는 돛자리를 펴서 앉고, 사용한 돛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린다.
-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지 않으며, 눕지 않도록 한다.

*진드기 대처법

- 외출 후에는 옷을 털고, 반드시 세탁하도록 하며, 귀가 후 샤워나 목욕을 한다.
- 외출 후에는 머리카락, 귀 주변, 팔 아래, 허리, 무릎 뒤, 다리 사이 등에 진드기가 붙어 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한다.
- 진드기에 물린 경우 대부분의 진드기는 피부에 단단히 고정되어있기 때문에 손으로無理하게 당기거나 핀셋을 이용하여 비틀거나 회전하면 진드기 일부가 피부에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핀셋으로 천천히 제거하고, 해당 부위를 소독해야 한다.
- 제거한 진드기는 버리지 말고 유리병에 젖은 솜을 깔고 냉장 보관하여 추후 혈액검사와 함께 진단기관으로 송부하도록 한다.

*안구건조증

- 원인: 수성눈물의 생성이 부족한 경우(쇼그렌증후군, 비쇼그렌증후군), 눈물의 구성 성분 중 물막의 증발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지방성분이 결핍된 경우, 눈꺼풀의 이상으로 안구표면이 노출되는 경우, 알레르기, 단순포진 등과 같은 감염, 콘택트렌즈 착용 등이 있다.
- 안구건조증은 일부 경우에는 오히려 눈물이 쏟아지듯이 많이 흐르는 눈물의 반사적 분비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.
- 대처요령: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병원을 방문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, 눈물의 보충, 눈물의 보존, 눈물의 증발 억제 및 눈의 온찜질 등이 있다.

*건선

- 원인: 유전적 요인, 개인 생활 요인, 환경적 요인, 면역학적 요인 등이 건선의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다. 그 외에도 그리고 편도선염, 인후염 같은 감염 및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.
- 건선의 여러 가지 합병증 중에는 대표적으로 건선 관절염이 있다. 관절 부위가 하나 이상 부어 오르면서 관절이 뻣뻣해지고 통증이 있을 수 있으며, 손의 경우 쥐는 힘이 떨어지게 된다.
- 건선의 예방 방법으로는 피부 자극이나 손상 피하기, 피부 보습제 사용하기, 목욕 시 과도하게 때를 밀지 않도록 하기, 목감기나 편도선염 등 감염 피하기, 술, 담배 등 하지 않기,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과로 피하기, 스테로이드제제 및 여러 가지 성분이 알려지지 않은 약제 사용 시 주의, 건조한 환경 피하기 등이 있다.

*췌장무시증의 주요 매개체

- 털진드기와 진드기 유충(chigger)이다.

*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

-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에 감염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어 발생하는 질환이다.
- 임상증상으로는 피로감, 고열, 구토, 설사, 식욕부진, 혈소판•백혈구 감소 등이 나타날 수 있으

며, 두통, 근육통, 출혈(혈뇨, 혈변 등), 신경학적 증상(의식저하, 경련 등), 다발성장기부전 등이 동반될 수 있다.

-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감염된 환자의 혈액 및 체액에 직접적인 노출로 인하여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.

***렙토스피라증**

-인수공통전염병으로 사람과 동물이 공통으로 걸리는 전염병을 말하며, 감염된 동물의 소변에 오염된 젖은 풀, 흙, 물 등과 접촉할 때 점막이나 상처 난 피부를 통해 감염된다.

-증상 발현 시 신속히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하도록 하며, 페니실린(Penicillin), 테트라사이클린(tetracycline)등을 조기 투여하도록 한다.

-사망율이 매우 낮으나, 황달이나 신장 손상이 있는 경우 주의 깊게 치료하지 않으면 20% 이상의 사망률을 보이므로 주의해야 한다.

-예방: 모든 음용수는 절대적으로 안전한 경우를 제외하고 끓여서 먹어야 한다.

***신증후군 출혈열**

-신증후군 출혈열 임상 경과: 발열기(3~5일), 저혈압기(수시간~3일), 핏뇨기(3~5일), 이뇨기(7~14일), 회복기(1~2개월)

-예방: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을 통해 신증후군출혈열을 예방할 수 있다.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은 고위험군에게 우선 접종하도록 권장되며, 한달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12개월 뒤에 1회 접종 하도록 하고 있다.

▣ 2차시 MSDS와 GHS

***MSDS(물질안전보건자료, Material Safety Data Sheet)**

화학물질의 유해 · 위험성 · 취급방법 · 응급조치 요령 등을 상세히 설명해주는 자료로써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설명서

***MSDS 도입 배경**

근로자의 알 권리 충족/ 유해물질로 인한 근로자를 위해 예방과 사고 시 신속 대처/ 화학물질 사용량의 폭발적 증가와 유해성 자료의 부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·체계적 화학물질관리의 필요성 대두/ 화학물질관리의 국제적 흐름에 동참

***MSDS 제공 방법**

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MSDS를 대상 화학물질 취급 공정 내, 안전사고 또는 직업병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, 사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중 하나 이상의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, 관리하여야 함

***GHS (화학물질 분류표지에 관한 세계조화 시스템)**

-화학물질 분류표지에 관한 세계조화 시스템

-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분류기준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분류하고, 통일된 형태의 경고표지 및 MSDS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

***GHS 경고표지 작성원칙**

대상 화학물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대상 화학물질의 용기 및 포장에 한글 경고표지를 부착 및 인쇄하는 등 유해 및 위험 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함

화학물질을 사용, 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경고표지의 유무를 확인하여 부착하여야 함

***경고표지의 요소**

명칭 : 당해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명칭

그림문자 :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, 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

신호어 : 유해, 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“위험” 또는 “경고” 문구

유해, 위험 문구 :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, 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유해,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 정보

공급자 정보 :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

***GHS 경고표지 부착 방법**

-대상 화학물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유해, 위험 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GHS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한다.

-화학물질을 사용,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경고표지의 유무를 확인하여 부착하여야 한다.

-화학물질 함유제제 단위로 용기 및 포장에 인쇄물 등을 부착한다.

-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경고표지의 내용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경고표지를 인쇄한 꼬리표를 달 수 있다.

***GHS의 이행으로 인한 기대효과**

-국제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유해, 위험성 정보 전달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건강과 환경보호가 강화

-기존 시스템이 없는 국가들에게 안정된 화학물질 관리 체계 제공

-화학물질을 중복해서 시험하고 평가할 필요성의 감소

-화학물질의 국제 교역 용이

▣ 3차시 작업장 소음에 의한 건강관리1

***소음이란?**

-소음은 듣기 싫은 소리이다.

-소음은 바람직하지 않는 소리이다.

-생활에 방해 또는 고통을 주거나 하는 등의 소리이다.

-소음은 주관적인 감각의 표현으로서 소음을 객관적인 물리음으로 정의하는 것은 극히 곤란하다.

-레저 활동 중이라도 우리 귀에 직접 큰 소리가 와 닿는다면 소음성 난청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.

-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위는 음의 강도인데, 이를 데시벨(decibel: dB)이라고 한다.

-매일 8시간씩 90dB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면 난청이 일어날 수 있다.

-소음은 주로 기계의 진동, 회전, 마찰, 충격 등에 의하여 발생한다.

***소음이 근로자에게 주는 영향**

-청각장애

-소음성 난청의 주원인

-작업능률 저하 및 재해 발생의 원인

-스트레스 발생

***소음성 난청의 종류**

-일시적 난청: 강한 소음에 노출되어 생기는 일시적인 난청

-영구적 난청: 회복과 치료가 불가능하다

-직업성 난청: 직업으로 인한 소음에 폭로되어 발생한 난청

-사회적 난청: 실생활 소리 노출에 의한 청력장애

-음향외상성 난청: 강한 소음에 단시간 또는 순간적으로 노출되어 발생하는 난청

***소음성 청력소실 및 난청의 특징**

- 눈에 보이는 외상이나 흉터가 없다.
- 귀의 와우 내 감각세포의 손상으로 인한 감각신경성 난청이다.
- 청력 손상은 회복이 불가능하지만 100% 예방이 가능하다.
- 소음노출이 중단되면 더 이상의 청력손실이 진행되지 않는다.

***소음작업의 구분**

- 소음작업: 1일 8시간 작업 기준으로 85dB 이상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
- 강렬한 소음작업: 100dB 이상 소음에서 1일 2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
- 충격 소음작업: 120dB 초과 소음이 1일 1만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

***소음의 크기에 따른 반응**

- 50dB 일 때 조용하다.
- 90dB 일 때는 매우 높고 계속 노출될 경우 청력손실이 가능하다.
- 110dB 일 때 귀가 멍하다.
- 125dB 일 때 고통을 느낀다.
- 140dB 일 때 참을 수 없고 단 한번의 폭로로 영구적 청력손실의 가능하다.

▣ 4차시 작업장 소음에 의한 건강관리2

***작업장내 소음방지 방법**

- 소음제거기나 방음막을 설치하거나, 차음재를 사용하여 소음원을 격리한다.

***청력보호구**

- 청력보호구의 종류로는 귀마개와 귀덮개가 있다.
- 차음효과는 귀덮개>귀마개 순이다.
- 착용해도 50dB 이상 감음은 불가능하다.
- 귀마개와 귀덮개를 동시에 착용시 3~ 5dB 추가 감음된다.

***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**

- 소음은 위의 소화흡수 억제하여 소화불량의 증상을 동반한다.
- 소음노출 작업과 야간 근무까지 병행할 경우 만성질환의 발생을 더 증가시킨다.
- 혈당이 올라간다.
- 스트레스가 생긴다.

***소음예방대책 중 음원 대책**

- 녹슬거나 고장 시 소음이 더 발생되기에 기계를 계속 유지 보수하여 운전의 정상화 유지 해야 한다.
- 소음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로 줄이는 방법을 강구한다.
- 기계나 설비 등의 동력을 절반으로 줄여 사용한다.
- 음원과 작업자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음의 세기는 거리의 반비례하여 감소함으로 소음이 발생하는 기계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작업대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.
- 방음실을 설치한다.
- 차음재 선택 시 단층보다 이중층이 더 좋다.
- 배관, 덕트 등의 연결부에 진동으로 인해 연결부가 파손되어 소음이 발생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진동 절연처리를 실시한다.

***청력보호구 사용 시 주의사항**

- 항상 귀마개, 귀덮개 등을 깨끗하게 유지한다.
- 귀 속이나 얼굴의 감염을 예방한다.
- 오염된 손으로 귀마개를 만져서는 안 된다.
- 청력보호구는 그냥 물로 세척 하면 안 되며, 귀마개는 비누, 귀덮개는 매일 3%의 과산화수소수로 세척해야 한다.

▣ 5차시 직장인 재난예방교육

***일사병 발생 시 대처법**

- 그늘지고 시원한 장소로 동료들 옮긴다.
- 체온이 내려가도록 물을 뿌리며 부채질을 한다.
- 미네랄과 수분을 같이 공급하는 스포츠 이온음료를 마시게 한다.
- 얼음찜질은 급격한 온도 변화로 환자의 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게 되므로 삼가해야 한다.

***고층빌딩에 불이 났을 때의 대처법**

- 연기가 들어올 수 있는 문틈을 모두 막고 물에 적신 천으로 코와 입을 감싼다.
- 창문을 열고 눈에 띄는 원색이나 흰색 천으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린다.
- 옆집과 연결된 발코니의 경량칸막이를 부수고 연기가 나오는 반대 방향으로 피신한다.

***지진 발생시 대처법**

- 실내에 있을 때는 화장실로 대피한다.
- 가방으로 머리를 감싼다.
- 고정되지 않은 물건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는다.
- 도시에서 지진이 났을 경우 가장 위험한 것은 지진 그 자체가 아니라 빌딩에서 떨어지는 유리창과 건물이다. 따라서 무조건 밖으로 뛰어나가지 않아야 한다.

***하임리히법**

- 음식물을 통해 기도 질식사고 발생시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방법
- 순간적으로 벌어지는 기도 질식사고 발생 시 우선 119에 신고를 하고 하임리히 응급처치를 실시한다.

***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해야할 근로자 정기안전, 보건교육의 교육내용**

-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
-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
-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

***채용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내용**

-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및 동선에 관한 사항
-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
- 사고발생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

***작업중지**

- 작업중지를 어길시 5년 이하 징역, 5,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.

***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**

- 사업장의 기계, 설비의 다양성, 유해물질 사용량 급증 등으로 법률자체가 복잡성을 띄게 됨

***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할 중대재해 사항**

사망자 1인 이상 발생 시, 3월 이상 요양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 시, 부상자 또는 직업 성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 시에는 지체없이 노동부에 보고 해야 함

▣ 6차시-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

*스마트폰 중독의 원인인 개인적 요인

- 외로움, 결혼생활의 불만
- 업무상의 스트레스
- 외모에 대한 불안. 걱정

*스마트폰 중독예방 수칙

-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스마트폰을 둔다.
- 스마트폰 자가중독 진단을 해본다.
- 사용하지 않는 어플들은 지운다.
- 스마트폰을 대신할 수 있는 취미생활을 찾는다.

*게임중독으로 발생하는 문제점

강박적 사용과 집착, 내성과 금단이 생기며, 일상생활의 기능 장애가 발생한다. 특히 일탈 행동 및 현실 구분 장애로 게임과 현실을 명확히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며, 마치 게임 속의 가상 세계를 실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.

*스마트폰 사용 실태

- 우리생활에서 떼어내려야 떼어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.
- 국민 4명 중 3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.
- 스마트폰에 몰입하여 걷는 사람을 일컫는 스몸비족의 신조어가 탄생하였다.
- 운전 중 스마트폰을 쓰게 되면 사고발생률이 20배 이상 증가하며 혈중 알코올농도 0.08%인 음주운전자와 비슷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.

*스마트폰 중독 유형

- 스마트폰 중독의 유형으로 쇼핑, 게임, 주식, 경매 등이 있다.

*스마트폰 중독의 영향

금단현상과 내성이 생기며, 일상생활에 장애가 발생한다. 특히 스마트폰 중독으로 직장 동료나 친구들과 얼굴을 마주하는 대화보다는 스마트폰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선호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소통이 단절되는 문제가 발생한다.

*스마트폰 사용의 장점

휴대하기 편리하고, 내 손안에서 인터넷을 즐길 수 있으며,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. 쉽게 게임과 음란물 어플리케이션을 접할 수 있다는 점은 스마트폰의 단점이다.

▣ 7차시 약물오남용 예방교육

*반응성 알콜중독

사랑하는 사람의 죽음, 사고에 서의 생존, 혹은 범죄 피해와 같은 지각된 위기를 경험하고 나서 시작되는 지나친 혹은 과도한 음주에 의해 특징되는 알코올중독

***니코틴중독의 특징**

- 끊기 힘든 중독증이다.
- 성인 인구의 4명 중 1명은 흡연자다
- 우리나라 성인 만 19세 이상의 흡연율은 1998년 이후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.
- 성인 여성 흡연율은 상승하고 있다.

***담배와 수명과의 상관관계**

- 1개피 ⇒ 5분 30초 단축
- 20개피 ⇒ 2시간 단축
- 1년 흡연 ⇒ 한 달 단축
- 10년 흡연 ⇒ 1년 단축
- 50년 흡연 ⇒ 5년 단축

***약물중독의 특징**

- 지속적으로 약물을 복용하고자 하는 강박적 욕망이다.
- 약물복용자의 체 내에 약물이 떨어지면 신경전달물질체계에 기능장애가 일어난다.
- 현실의 고통에 대응하는 방식이지만 스스로를 파괴하면서 대응하는 방식이다.
- 감정적, 신체적 고통을 잊기 위하여 약물을 복용하지만 나중에는 그 약물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해진다.

***영아금단 증후군**

약물중독인 부모가 낳은 아기들이 겪는 증후군으로 지난 10년간 5배 이상 증가한 증후군

***알코올이 뇌에 끼치는 위험성**

- 마비 현상이 일어난다.
- 감각과 운동의 둔화가 나타난다.
- 대뇌피질의 기억 세포가 파괴됨으로 기억력 감퇴현상이 일어나며, 이로 인해 학습 효과가 저하된다.

▣ 8차시 소방안전교육

***연소의 3요소**

산소, 점화원, 가연물. 이 중 하나 이상을 제거하거나 격리시키면 소화된다.

***화재의 특성**

- 성장성
- 불안전성
- 특정장소
- 시간과 상관없이 발생한다. (겨울과 봄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)

***화재 예방 대책**

- 1) 일반화재 예방 대책
 - 쓰레기통은 불연성 재료를 사용함
 - 어린이의 불장난, 금연구역 및 위험물 저장소 주변에는 절대 금연
- 2) 전기화재 예방 대책
 - 노후 된 전열 기구의 사용 금지, 적정 용량의 퓨즈 사용
 - 전열기 주위의 가연물 제거, 전열기 코드의 문어발식 사용 금지

-외출 시 플러그는 반드시 뽑아 놓고, 허가 된 전기용품만 사용

3) 가스화재 예방 대책

-가스기구를 사용할 때는 주기적으로 누설검사를 실시하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중간 밸브를 잠금

-가스 누설 시는 중간 밸브를 잠그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킨 후 바닥에 깔려 있는 가스를 비로 쓸어 내듯이 밖으로 내보내고 주변의 불씨를 제거하며, 전기기구를 조작하지 말아야 함

*소화기 관리 및 점검요령

-분말 가루가 굳지 않도록 한달에 한번 정도는 소화기를 거꾸로 뒤집거나 흔들어주어야 한다.

-소화기 게이지가 노란색 부분에 있는 경우는 압력가스를 재충전해야 한다.

-소화기 게이지가 빨간색 부분에 있는 경우는 압력가스가 과다충전되었다는 의미이나, 사용에는 지장이 없다.

-소화기는 습기가 많은 장소는 피해서 설치한다.

*소화의 원리

-타는 물질의 온도를 발화점 또는 인화점 이하로 냉각시키면 연소를 중단시키는 방법을 냉각소화라 하며, 대표적인 냉각제는 물이다.

-가연성 물질을 연소장소에서 제거하여 불의 확산을 저지하는 방법을 제거소화라 하며, 고체 가연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가스 밸브를 잠그는 것이 그 예이다.

-가연물질이 연소하는데 필요한 산소의 양을 감시키는 소화방법을 질식소화라 하며, 포소화학제를 사용하여 거품으로 산소공급을 차단하는 것이 그 예이다.

-가연성 금속에 대한 화재는 물로 소화를 시도해서는 안된다.

*소화기 관리 및 점검요령

-분말 가루가 굳지 않도록 한달에 한번 정도는 소화기를 거꾸로 뒤집거나 흔들어주어야 한다.

-소화기 게이지가 노란색 부분에 있는 경우는 압력가스를 재충전해야 한다.

-소화기 게이지가 빨간색 부분에 있는 경우는 압력가스가 과다충전되었다는 의미이나, 사용에는 지장이 없다.

-소화기는 습기가 많은 장소는 피해서 설치한다.

*소화기의 올바른 사용 방법

-소화기는 각 층별, 각 실별, 대상물별 능력단위 이상으로 설치하며, 소형소화기는 보행거리 20m 이내 마다 설치, 대형소화기는 보행거리 30m 이내가 되도록 바닥으로부터 1.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'소화기'라는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.

-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손잡이를 잡고 불 쪽으로 접근

-손잡이 앞쪽에 있는 안전핀을 힘껏 뽑음

-바람을 등지고 화점을 향해 호스를 빼들고 손잡이를 움켜잡

-불길 주의에서부터 빗자루로 쓸듯이 골고루 방사

*옥내 소화전 관리요령

-소화전함이나 부근에 조작설명서를 부착한다.

-호스는 지그재그 형태로 꼬이지 않도록 수납, 보관한다.

-옥내 소화전함 내부에 습기가 차거나 호스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.

-전원은 항상 ON 상태로 해둔다.

*화재 발생시 업무분담

-화재발생 장소 근무자는 '불이야'라고 소리를 질러 화재 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초기소화를 시도해야 한다.

-소화반은 소화기, 소화전을 이용하여 화재를 진압한다.

- 연락반은 건물 내 관계자, 119등 관계기관에 화재를 통보한다.
- 피난유도반은 직원 및 방문자의 피난을 유도한다.

***화재발생시 대처방법**

- 연기를 내보내기 위해 사무실의 창문을 개방한다.
- 평소에 숙지한 피난경로 및 비상구로 신속히 대피한다.
- 휴대용 랜턴을 사용한다.
- 화재 발생시 발화층보다 낮은 층으로 대피한다.

***피난시설 위치와 피난경로**

- 1) 피난유도 시 화재발생 장소 고려하여 대피
- 2) 발생장소와 반대방향, 발화층보다 낮은층으로 대피

***비상배연 방법**

- 1) 각 층의 배연창 화재 발생 시 자동개방
- 2) 사무실은 창문개방

***비상대피 준비사항**

- 1) 피난경로 및 비상구 확인
- 2) 피난경로 장애물 제거
- 3) 직원 및 방문자 대피상황 통보